

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4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30

-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-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764	2009.1.30	2009.2.4	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9.2.19)	원안 동의

- 제안이유 및 요지 (도시계획국장 송득범)

가. 제안 이유

- 서울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, 현재 접근성이 불량하거나 급경사로 시설이 곤란한 공원을 녹지로 변경 또는 인접한 공원에 편입하여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보전코자 함.

나. 주요 요지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공원	근린공원	동작구 흑석동 18-1일대	6,600	감)6,600	-	'77.7.9	검은돌
신설	녹지	경관녹지	"	-	증)2,975	2,975		
폐지	공원	어린이공원	동작구 상도동 산67-117	950	감)950	-	'71.3.22	사슴
변경	공원	근린공원	동작구 상도동 산65-41일대	358,500	증)3,727	362,227	'82.9.16	상도

※ 검은돌근린공원은 6,600㎡가 결정되어 있으나 실제면적은 2,975㎡임.

※ 사슴어린이공원 950㎡는 폐지하고, 인접지역을 포함 3,727㎡를 상도근린공원에 편입함.

- 도시관리계획사항

- 동작구 흑석동 18-1일대 : 자연녹지지역, 역사문화미관지구, 도로(저축)
- 동작구 상도동 산67-117일대 : 제1종일반주거지역, 공원(저축)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가. 주민의견청취 (2008.3.6~3.20) : 의견 없음.

나. 구의회 의견청취 (2008.4.22) : 원안 동의

- 녹지공간은 주변을 고려하여 소나무 등 향토수종과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는 녹지조성계획 수립시행 권고 (조치계획: 반영)

다.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2008.4.25) : 원안 가결

- 관련부서 의견

관련부서	검 토 의 건	조 치 결
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 경 과	○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원조달 계획수립	○ 반 영
공원조성과	○ 검은돌근린공원의 일부면적 (2,975㎡)이 아닌 전체면적 (6,600㎡)을 경관녹지로 변경 ○ 사슴어린이공원을 주변임야를 포함하여 상도근린공원에 편입은 바람직함.	○ 검은돌근린공원은 6,600㎡로 결정되어 있으나 오류이며, 실제 면적은 2,975㎡로 지적공부 확인됨. ○ 반 영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

-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불량한 경사지 등을 녹지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사항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의 개선효과가 있음.

8. 기 타

- 편입토지 및 저축건물 현황

- 동작구 흑석동 18-1일대

- 편입토지 : 33필지 2,975㎡ (사유지617㎡, 공유지76㎡, 국유지2,282㎡)

- 저축건물 : 해당 없음

- 동작구 상도동 산67-117

- 편입토지 : 1필지 3,727㎡ (국유지)

- 저축건물 : 해당 없음

- 재원조달방안 : 3,57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10년	2011년	2012년이후	비 고
소요예산	3,575	1,666	909	1,000	구비 2,138 시비 1,437
보 상 비	3,575	1,666	909	1,000	

9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- 본 안건은 동작구 흑석동 18-1일대 외 1개소의 공원을 녹지 또는 공원으로 변경결정 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임.

- 이는 서울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, 현재 이용 접근성이 불량하거나 급경사로 공원시설이 곤란한 사실상 녹지공간을 공원에서 녹지로 변경하거나 인접한 공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려는 것임.

- 구체적으로 동작구 흑석동 18-1일대 근린공원 2,975㎡ 전체를 경관녹지로 변경하고, 동작구 상도동 산67-117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950㎡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- 대상지는 모두 접근이 곤란한 급경사의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주민생활 여건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,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공원을 새로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세분사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공원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,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은 검토가능하다고 판단됨.

- 참고로 총 사업비는 35억7천5백만원이나 대상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 로 사실상 회계 이관에 따른 비용계상으로 실제 투입되는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1. 토론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2. 심사 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